



##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11월

### CONTENTS

#### 세법 집행기준 개정

-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안내
-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2023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 예규판례

##### ○ 법원

-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 후문의 하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 조세심판원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통신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경우, 해당 지급액이 판촉용역의 대가인지 혹은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정산금인지 여부

##### ○ 기획재정부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

##### ○ 국세청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대목적 사업용자산 관련, 조특법§13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
- 연결납세 관련, 중견기업 판정 시 매출액 계산방법 등
-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계산 방법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 세무동향

###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안내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16.(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11.2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 분납 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 ○ 납부유예 신청

-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음

#####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정부는 11.27.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11.2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 재정지원

-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  
(전력망)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폭적인 기업부담 경감방안 즉시 마련  
(기반시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인력)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 세제지원

- 국회와 협의하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포함  
(공제율)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 금융지원

- 2025년 14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투자 본격 집행  
(대상) 소부장,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쏠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대출, 보증, 보험)

## 기획재정부, 「2023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매년 전년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정리한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간한 「202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조세법령 중 2023 년 등 최근 공포된 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 간추린 개정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23 간추린 개정세법(Link)

-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기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신설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예규판례

### [법원]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 후문의 하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국승)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 두 41069 판결, 상고기각)

#### ■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과정에서 투자주식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 후문의 하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 투자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혹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 사안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과 각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음. 조사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투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음. 원고는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판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은 전문에서 "제 5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 조 내지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규정')에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 60 조 제 3 항 및 법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 사건 후문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2 항, 제 55 조 제 1 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1) 이 사건 후문규정은 장부가액의 의미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 2)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은 전문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후문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그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은 그 적용범위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3) 이 사건 후문규정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선택한 회계정책 등에 따라 순자산가액의 하한인 장부가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후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조세심판원]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서 0822, 2024.10.22., 취소)

### ■ 쟁점

토지 매수인이 토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사안

주식회사 b 는 2020.12.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d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24. 주식회사 d 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상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b 는 위 계약상지위이전계약을 승낙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2.2.24.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이를 f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음

한편, 미추홀구청장은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 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 11 조 제 3 항에 근거한 정밀조사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 와 d 는 2022.1.26. 위 토양오염 정화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고자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b 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토지의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하기로 약정함

그런데, 주식회사 b 는 위 정밀조사 결과가 자신이 처음 예상한 토양오염의 정도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거나,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오염 정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목적으로 직접 정화용역 업체와 오염토양 반출정화계약 등을 체결하여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음. 청구법인은 2022년 제 1기~2023년 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에 따른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다른 매입세액과 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환급신고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59 조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았다가, 2023.11.14.~2023.11.3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9 조 제 1항 제 7호 등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나머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을 환급한 후, 2023.11.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9 조 제 1항 제 7호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세액 중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그러나,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2 두 22447 판결, 같은 뜻임)이고, 토지의 경우 영구성을 갖는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토지 관련 지출’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07 헌바 1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오염된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토지복원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부동산) 매매계약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합의서 및 청구법인과외 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서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토양오염이 없음을 전제로 매매가격 등을 산정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발견된 오염토양 정화 비용을 매도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1 심 법원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매도인이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변동되어 취득가액에 합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해당 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개발(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 통신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경우, 해당 지급액이 판촉용역의 대가인지 혹은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정산금인지 여부

(조심 2024 전 2335, 2024.11.4., 결정)

### ■ 쟁점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

### ■ 사안

청구법인은 2018.3.1. 이동통신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A”)와 A 멤버십 서비스 제휴계약(이하 “쟁점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가 발급한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특정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 금액을 공동할인(할인액의 40%를 A가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직영점·가맹점이 각각 30%를 부담)하여 주고, A로부터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원(2018년의 경우 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제휴계약에 의한 할인물품을 직영점·가맹점에 공급하면서 A가 정산금으로 부담하는 할인액 40%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2018~2021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결과,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은 고객의 할인액을 단순 보전해 준 것이 아닌,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제휴사들은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A에 판촉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7.20. 및 2024.1.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8.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2024.1.15. 기각결정)을 거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함

한편, 청구법인은 기 신고된 쟁점금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처 등을 다르게 하여 이중과세하였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음(A가 부담하는 40% 상당의 할인액 이외에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30%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에 포함시켜 환급받음)

### 결정요지

A와 업무 제휴사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A통신사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A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자사포인트 사용을 통해 제품할인을 원하는 청구법인의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영점·가맹점은 이러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제휴계약의 목적과 동기는 A통신사포인트 사용에 의한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확대 및 A가입고객유치 등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A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포함한 금액은 대략 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거액에 상당하는 광고 및 홍보활동을 청구법인이 A를 위해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도 부족해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A 회원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고, 그 할인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A로부터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후 가맹점 등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물



품가액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가맹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쟁점금원은 A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 2항 제 9호 나목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획재정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 **■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 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 (제 1 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제 2 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 2: 쟁점 1에서 제 1 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 (제 1 안) 주식 취득가액은 0 원임
- (제 2 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 **회신**

귀 질의의 쟁점 1과 쟁점 2의 경우 제 1안이 타당함

## [국세청]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과세방식 선택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344, 2024.1.11.)

### ■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시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투자포함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 (1 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음
- (2 안) 이전 사업연도 과세방식을 변경하여야 함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1~'22 사업연도에 투자제외 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1 사업연도 19.4 억원, '22 사업연도 4.4 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신고함
- 질의법인은 자기자본 500 억원 초과법인에 해당되어 '23 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 발생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 19199 호, 2022.12.31.)됨에 따라 2023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2 제 1 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내국법인이 2021 사업연도 및 2022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6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23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적용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때, 2023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2 사업연도분에 대해 같은 조 제 2 항 제 2 호의 방법(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 항 제 1 호(투자포함방식)와 제 2 호(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2023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 2 항 제 1 호(투자포함방식)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4 사업연도분도 동일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임

**[국세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71, 2024.6.12.)

■ **질의**

‘19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30 의 4 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20 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 사업연도에 「‘19 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사업연도에 ‘19 사업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19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회신**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4(2021.12.28. 법률 제 186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 2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국세청] 임대목적 사업용자산 관련, 조특법§130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의미**

(기준-2024-법규법인-0073, 2024.6.28.)

### ■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렌탈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렌탈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30②의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임대법인(자문대상법인)의 렌탈사업장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업장(렌탈자산 사용장소)인지 여부

### ■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차량, 정보통신기기 및 의료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200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하였으며, 2020~2022 사업연도에 취득한 렌탈자산들(모두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에 따르면 렌탈자산들은 모두 임차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함

###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 130 조 제 2 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세청] 연결납세 관련, 중견기업 판정 시 매출액 계산방법 등

(서면-2024-법인-0524, 2024.7.23.)

### ■ 질의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이 연결집단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등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6.11 월 설립되어 운송(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이 100% 투자한 완전 자회사임
- ‘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전 3 개연도 평균 매출액이 3 천억원 미만으로 개별납세방식(중견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일반법인의 공제금액(청년등 400 만원, 청년등 외 0 원)을 적용하여 고용중대세액공제를 신청(연결모법인과 모든 연결자법인의 직전 3 개연도 평균매출액이 3 천억원을 초과하여 일반법인으로 판단)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의 4 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 조의 4 제 1 항 제 4 호의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호의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 제 76 조의 8 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공제액으로 고용중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국세청]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계산 방법**

(사전-2024-법규법인-0552, 2024.10.21.)

### ■ 질의

- (질의 1)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질의2) 질의1에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이 합병교부주식의 시가인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23 년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 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 당사법인이 협의한 합병비율은 1:0.3537439 이며, 신청법인은 합병대가로 신청법인의 신주 113,694 주(합병교부주식)를 교부하였음
- 합병 당사법인은 해당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및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았음
- '24 년 중, 신청법인의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 개월 전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 및 신청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제 3 항 제 3 호(‘고용승계 위반’)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이에 신청법인은 '24 년 법인세 신고 시 합병매수차손익 및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함

### 회신

(질의 1) 「법인세법」 제 44 조의 3 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 4 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 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 [국세청]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법인-3395, 2024.11.5.)

### ■ 질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시설에 대한 개정 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첨단소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았음  
(\*) '21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21.12.28. 법률 제 18634 호), (부칙)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질의법인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시설과 동일한 성격의 이차전지 소재 시설에 대해 202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음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mailto: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mailto: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mailto: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mailto: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mailto: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